

지역자원 안내서



< 목 차 >

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때

1. 어르신의 안전을 체크합니다.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임대아파트 안심콜 서비스

폭염대비 무더위 관리 사업

2.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주거현물급여

희망온돌 : 행복한 방 만들기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3. 위기상황에 도움을 드립니다.

실종대비 사전등록제

u-서울 안전서비스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상담지원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긴급복지지원제도

4. 독거노인에게 더 큰 관심을 드립니다.

독거노인보호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보호사업: 독거노인사랑잇기

독거노인보호사업: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홀몸 노인 일일 방문 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건강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때

1.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노인 틀니 지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

스마일재단 치과치료지원사업

2. 눈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노인 실명 예방 안검진 지원

노인 실명 예방 개안수술 사업

3. 그 외 신체(귀 등)가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4. 방문해서 진찰해드립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영구임대아파트 으뜸이 진료 봉사

재가 암환자 관리

5.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어르신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6. 기타 건강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노인 국가예방접종서비스

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시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저소득 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7. 기타 필요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서울건강콜센터

서울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

돌봄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때

1.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2. 집에서 돌봄을 지원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데이케어센터(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3. 기타 돌봄을 도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정신적 지원이 필요할 때

1. 우울하거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도와드립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2.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드립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프로그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일상생활 관련 지원이 필요할 때

1. 가사를 도와드립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단기가사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

2. 식사를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임대주택 행복한 반찬선물세트

3. 기타 도움을 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전용구급차

친구 및 문화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을 때

1. 친구를 만들어드립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2.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문화통합이용권)

저소득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 지원

3. 기타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1. 생계가 어려운 분께 급여를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주택연금

2. 비용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경로우대제도(비용감면)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열요금 감면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3. 세금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경로우대제도(세제혜택)

4.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드립니다.

희망온돌: 희망마차

정부양곡 할인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5. 기타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무료법률구조

법률홈닥터

서울시 마을변호사

성년후견제도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사랑의 그린PC 지원

그린스마트폰 지원

치매가족에게 지원이 필요할 때

치매가족휴가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전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때

1. 어르신의 안전을 체크합니다.
2.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3. 위기상황에 도움을 드립니다.
4. 독거노인에게 더 큰 관심을 드립니다.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어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실시간 안전확인 체계 확립 및 긴급상황 등에 대처
하고 말벗서비스 제공으로 독거노인 사회적 관계 유지

1. 지원대상(조건)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장기질병 보유자 등 실시간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지원내용

- 주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안전 확인
 - 화상폰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자택의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말벗서비스
 - 어르신이 집에 없으면 이동감지센서를 이용해 귀가 여부 확인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수행기관에서
 - (언제) 연중 상시
 - (어떻게) 별도 신청 없이 발굴된 독거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02-2130-7420
독거노인지원센터

임대아파트 안심콜 서비스

급속한 고령화 사회 도래로 SH공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께 찾아가는 말벗 및 안전확인 서비스 실시

1. 지원대상(조건)

- SH공사 직영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홀몸노인

2. 지원내용

- 주 1~2회 반복 시행
 - 상담원 안부 전화를 통해 건강체크 및 말벗서비스, 입주민 불편사항 접수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SH 공사에서
 - (언제) 연초에
 - (무엇을) 대상자를(단지별 10명씩)
 - (어떻게) 직접 선발하여 제공함.
- 담당부서 연락처 : SH공사 ☎ 1600-3456 / www.i-sh.co.kr

폭염대비 무더위 관리 사업

독거어르신 등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보호

1. 지원대상(조건)

- 독거노인 등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2. 지원내용

- 안전 확인
 - 폭염 대비 기상청 문자알림서비스
 - 홀몸노인에 대해 주1회 방문 및 주2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전에 배부된 폭염 대비 홍보리플렛을 활용하여 행동요령을 안내
 - 사랑의 안심폰을 지급한 홀몸노인은 폭염특보발생 등 특수한 상황 시 영상과 동작감지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귀가여부 등 안전을 확인
 - 쪽방촌과 독거노인 등에 대한 순회 진료 강화
- 무더위쉼터 운영
 -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설치
 - 구급약품, 냉방비 등 운영비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7월 ~ 9월, 평일 09:00~18:00 (열대야 등의 경우 연장운영)
 - (어디로) 자치구 무더위쉼터에서
 - (어떻게)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주거현물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의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과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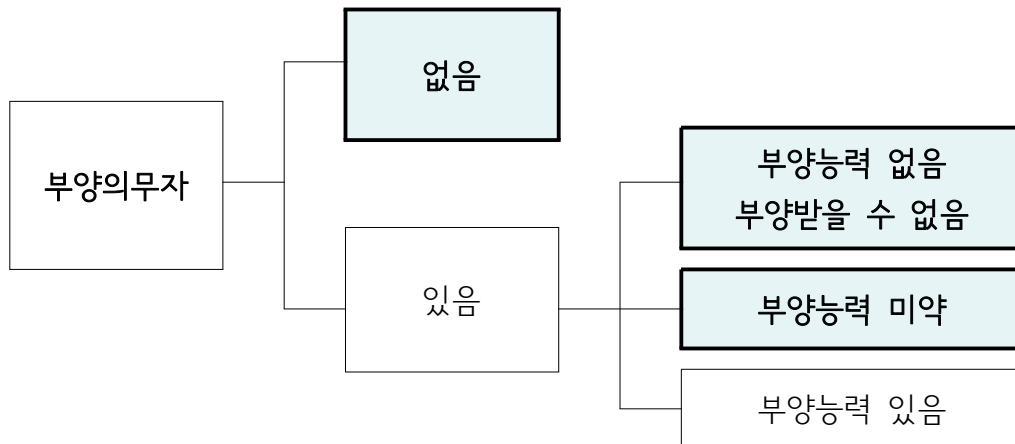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downarrow$ $\hookrightarrow$ (재산-기본재산액-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이행급여특례수급자, 의료급여유예특례수급자, 보장연장특례수급자, 해외인턴·군입대자
가구 수급자범위 특례자 등의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 초과자
-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전체가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무료임차자 또는 무주택자
- 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자

2.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 주거 현물급여
 - 3년에 1회 기준으로 집수리 수선비 지급
- 주거 현금급여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자가가구 등의 범위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다만 주택소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제외가능)
-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본인 및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권)이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 (어떻게) 방문하여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희망온돌 : 행복한 방 만들기

습기와 곰팡이 등에 노출된 어려운 이웃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침수피해가정 등 주거환경 개선 관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2. 지원내용

- 상 시 :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 간단한 수선 및 교체(소형가전), 냉장고 정리, 대청소 등
- 여름철 : 에어컨 청소·설치, 방충망 설치, 모기해충 방제방역, 희망마차를 활용해 여름철 생필품(습기제거제, 모기약, 여름 속옷 등) 긴급지원
- 겨울철 : 난방기기 점검·수리, 보온장구 지원, 창틀·출입문 단열, 기타 보온단열
- 장마철 : 침수피해 저소득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집안청소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 및 해당 사례를 발견한 주변인이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로
(무엇을) 서비스 신청(필요욕구/현 가구 상황 및 주요문제/기타 특이사항)을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등으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복지재단 희망온돌사업 ☎ 02-724-0840

ondol.welfare.seoul.kr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희망의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1. 지원대상(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자가, 세입자 포함)

2. 지원내용

구분	공공주도형(맞춤형)	민간참여형(단열중심)
사업 방식	권역별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집수리 실시	협약기관(비영리민간단체) 중심, 민간기업의 후원 및 자원봉사를 통한 집수리 실시
수리 항목	13개 공중내역 수리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화장실, 주방), 도장(페인트), 전기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5개 공중내역 수리 : 도배, 장판, 단열, 새시(이중창), 전기
지원 범위	가구당 100만원 이내	가구당 300만원 이내 (시 지원금액 12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상반기 하반기 2회 모집기간 동안
 - ※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수시 발굴 실시
 - ※ 집수리 실시 : 4~11월 (2015년 기준)

(어디로) 동 주민센터로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다산콜센터 ☎ 120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2015년 기준)

연번	관련기관	전화번호
1	종로 사회복지과	2148-2575
2	중구 사회복지과	3396-5394
3	용산 사회복지과	2199-7133
4	성동 사회복지과	2286-6296
5	광진 사회복지과	450-7096
6	동대문 사회복지과	2127-5143
7	종랑 사회복지과	2094-1693
8	성북 생활보장과	2241-2382
9	강북 노인복지과	901-6727
10	도봉 생활보장과	2091-3344
11	노원 복지정책과	2116-3671
12	은평 생활복지과	351-7084
13	서대문 사회복지과	330-1863
14	마포 복지행정과	3153-8812
15	양천 주택과	2620-3466
16	강서 사회복지과	2600-6355
17	구로 주택과	860-2927
18	금천 사회복지과	2627-1983
19	영등포 사회복지과	2670-3402
20	동작 사회복지과	820-9674
21	관악 생활복지과	879-5992
22	서초 사회복지과	2155-6661
23	강남 사회복지과	3423-5882
24	송파 복지정책과	2147-2705
25	강동 사회복지과	3425-5733

주거복지지원센터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위기에 몰린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문제 관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

2. 지원내용

※ 각 센터마다 사업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① 상담사업

- 주거관련 정보제공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호법, 재개발 관련 문의 및 상담
- 주거복지지원제도 안내 : 주택바우처, 전세자금대출 등
- 주거복지 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한 주거실태 파악 및 관리

② 긴급지원사업

- 긴급 임대료 지원 :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퇴거해야 할 긴급한 상황일 경우 일시 지원
- 전세, 월세,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안내
- 긴급난방비지원
- 주거환경개선 직접 사업 실시

③ 공공자원 연계 및 지원

- 일반임대주택, 맞춤형임대주택 입주 지원
- 공공임대, 공공융자 등의 사업 연계
- 공공임대주택입주민들의 자조모임 구성

④ 주거교육

- 주민교육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호법, 각종 주거복지지원제도 안내
- 주거복지 사례관리사, 지킴이 양성 교육 등

- ⑤ 비주거 거주지역 주거생활 안정
 - 자활근로 프로그램 및 취업연계
 - 주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임대주택 입주계획 수립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인근 주거복지지원센터로
 -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 (어떻게)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상담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

1. 지원대상(조건)

-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은 사회취약계층 2,000가구
 - 사회취약 일반 1,600가구,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400가구 지원
- ※ 사회취약계층 : 저소득가구,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 친환경 주거개선은 700가구
 - 사회취약 일반 500가구,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200가구
-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서비스는 200명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2. 지원내용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₂,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진단 및 생활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주거개선 지원
 - 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주거환경 개선
-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
 - 어린이와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한 보호자에게 소정의 교통비 및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 보전
- 실내환경 개선 및 환경성질환 어린이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 후 1회 이상 경과 및 개선효과 조사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시군구청으로

(무엇을) 서비스 신청을

(어떻게) 방문 등을 통해 접수 → 초기 상담 진행 후 연계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306

환경부 ☎ 044-201-6763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옥내급수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지원으로 옥내 급수관 개선을 촉진하여 녹물출수 방지 및 수질 개선

1. 지원대상(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2. 지원내용

- 급수시설인 옥내급수관 갱생 또는 교체 공사비 지원(총 공사비의 80% 이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사비 전액	최대 150만원	최대 250만원	최대 120만원 (공용급수관 4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 공사 시작 전에 승인을 받아야 지원 가능)
(어디로) 관할 수도사업소로
(무엇을)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어떻게) 사업소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를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다산콜센터 ☎ (02) 120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i121.seoul.go.kr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및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

1. 지원대상(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가구

2. 지원내용

- LPG 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동 주민센터로

(무엇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 기초노령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떻게) 방문하여 상담 받고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우리구 관내 방역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

1. 지원대상(조건)

- 관내 방역소독이 필요한 지역

2. 지원내용

- ※ 자치구 보건소 마다 상이함.
- 취약시설 중점 살충, 살균 소독
- 수급자, 독거노인, 노인정 등의 바퀴벌레 및 개미 구제 : 튜브형 살충제 보급
- 유충 구제 : 유충조사 및 유충구제약품 살포
- 동절기 월동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분무소독
- 새마을자율방역단 구성·운영
- 재해대비 감염병예방약품 비축관리
- 쪽방촌 「사랑나눔 해충박멸 프로젝트」 사업
- 방역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대상 해충 발생신고 및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관내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어디로) 거주지 보건소로
(무엇을) 서비스 신청을
(어떻게)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실종대비 사전등록제

아동, 여성, 장애인의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

1. 지원대상(조건)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2. 지원내용

- 신상정보, 신체특징, 사진, 지문 등을 기록하여 사전신고증 교부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보호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홈페이지나 경찰서나 지구대로
(무엇을) 보호대상자의 사진과 지문(신청 시 체취), 신청서(신청기관 구비)를
(어떻게) 인터넷 또는 경찰서, 지구대 방문, 전화로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실종아동찾기센터 ☎ 182, 117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02-3150-2249

www.safe182.go.kr

u-서울 안전서비스

첨단 IT 기술을 활용,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자녀의 현재위치, 등하교 등을 확인하고, 긴급호출시 112신고센터 및 구청 CCTV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비상대응 서비스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초등학교 어린이,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2. 지원내용

- u-서울 안전 전용 단말기 보급
 - 현재 위치 조회 :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 제공
 - 안심존 이탈정보 : 집주변, 병원 등 미리 설정한 지역 이탈시 문자 알람
 - 자동위치알림 : 1일 최대 4회 지정된 시간에 자동 위치알림 통보
 - 등하교 문자 알림 : 자녀가 등하교 시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등하교 SMS 문자 통보 서비스 제공
 - 이동경로 조회 : 자녀의 최근 24시간(당일~3일) 동안의 이동경로를 조회
 - 비상호출 및 비상통화 (SOS 비상호출, 음성통화, 현장음 자동 청취)
 - T-MONEY 기능
- ※ 휴대폰이 있는 경우 원터치SOS 신청으로 이용 가능
- 구매 비용
 - 저소득가정 :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교육복지시설, 장애인, 치매노인 등 법적 보호대상 가정)
 - 일반가정 : 월 기본 이용료(7,700원), 월 음성통화 30분(2,200원, 옵션) 유료
(일반가정 초등학생)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홈페이지나 성동구청, 학교,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콜센터로

(무엇을) 단말기 구입(선택사항) 및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어떻게) 인터넷 또는 전화, 팩스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콜센터 ☎ 1577-6768, 02-2040-0776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 02-2133-2847

성동구청 전산정보과 ☎ 02-2186-5878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u-서울 안전서비스 www.safetyseoul.co.kr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상담지원 서비스

치매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증진

1. 지원대상(조건)

- 실종 치매 어르신의 가족
-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자 하는 가족

2. 지원내용

- 실종치매어르신 가족 지원
 - 국가치매포털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Tel: 031-628-6733)
 - 실종노인 사례 접수·등록 및 가족상담
 -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사진홍보 및 캠페인 진행
 - TV,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실종노인 사진 홍보
- 시설메일링 서비스
 -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실종치매어르신 입소여부 확인 요청
- 실종대응 카드 등 자료 제공
 - 실종 시 대처 요령, 실종예방 팁 등 치매어르신 실종과 관련된 정보제공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와의 사례 공유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치매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인식표를 제공
- 시설보호 무연고노인 및 실종치매노인 신상자료 관리
 - 무연고노인, 실종치매노인 신상자료를 DB화하여 실종접수 시 무연고노인 자료와 비교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
- 유전자 검사자 신상 자료 관리

- 경찰청으로 부터 유전자의 신상자료 및 검체를 인계 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감식 의뢰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자치구치매지원센터 또는 보건소로 /
중앙치매센터로

(무엇을) 인식표 신청서 및 동의서를 /
상담 신청을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치매정보365(중앙치매센터) ☎ 031-628-6733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

1. 지원대상(조건)

- 가정 및 시설,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등의 학대 피해 노인

2. 지원내용

① 학대 피해노인 상담

- 24시간 전문상담
-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 사례회의 및 전문 사례 관리, 사례판정위원회
 - : 상담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를 유형화(일반, 잠재, 비응급, 응급 등)하여
현장조사 →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실시
- 일시보호 서비스 :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서비스, 긴급 의료지원 서비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동의하는 경우
 - ※ 치매노인은 일시보호 후 증세에 따라 적합한 시설로 연계

- 서비스내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 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 상담 및 심리치유 서비스, 의료비 지원
 - :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 ： 퇴소 후 사후 모니터링
 - ： 원가족 복귀 또는 타자녀와의 동거, 시설입소 등을 지원
- 심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절차
 - 입소 후 72시간 내 간단한 건강검진 실시
 - 입소 후 일주일 내 건강진단서 및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구비
- 서비스기간 : 3개월 이내(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재입소의 경우 퇴소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시도 승인 필요
- ③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교육
- ④ 언론매체, 문자, 옥외, 캠페인 등 홍보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학대 피해자 및 가족, 이웃, 신고의무자 등 학대를 목격한 자가
 - (언제) 언제든지
 - (어디로) 24시간 노인학대 긴급전화로
 - (무엇을) 도움 요청 또는 입소 의뢰를
 - (어떻게)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노인학대신고전화 ☎ 1577-1389 / 110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02-3667-1389
 -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2-3472-1389
 -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2-921-1389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1. 지원대상(조건)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1개월 경과,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이며 교정시설 출소 6개월 이하로 가족과 단절되거나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85%(1인 기준 1,141천원, 4인기준 3,086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0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1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7만원 (4인기준)	6회
	부 가 급 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0.9만원, 중 33.3만원, 고 40.8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그밖 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0,800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민간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은 아니나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만 예외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위기상황에 놓인 당사자 또는 주변인 누구든지
- (언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 (어디로)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무엇을) 긴급지원대상 지원 신청서 등을
- (어떻게) “선지원 후조사”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지원 적정 심사)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독거노인보호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1. 지원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①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②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③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예) 어르신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2. 지원내용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건강·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예방서비스 제공
 - 안전확인서비스 :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주1회 이상 방문 및 주2회 이상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등 안전확인 실시
 - 생활교육 : 5인 이상 독거노인 등에게 가까운 장소에 모여 분기당 1회 이상 생활교육 제공
 - 서비스연계 : 독거노인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대상자가

- ※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추가 대상자는 의뢰받음.

- (언제) 매년 1~2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중 제공

- (어디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 (무엇을)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 (어떻게) 시군구청에서 승인 후 서비스 제공(무료)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청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독거노인보호사업: 독거노인사랑잇기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1. 지원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1순위)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2순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 취약

2. 지원내용

- 사랑 잇는 전화 : 주 2회 이상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안부 확인
 - 정서적 지원 및 노인복지정보 제공
 - 긴급출동시스템운영 : 일정기간 이상 부재 시 해당 지역 독거노인 돌봄기본 서비스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긴급출동을 통한 실시간 안전을 확인
- 마음 잇는 봉사 : 자원봉사자와 결연된 독거노인에게 월 1회 이상 방문, 청소 등을 도우며 비정기적으로 후원금품 전달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대상자가
 - ※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추가 대상자는 의뢰받음.
 - (언제) 매년 1~2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중 제공
 - (어디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으로
 - (무엇을)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 (어떻게) 시군구청에서 승인 후 서비스 제공(무료)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독거노인보호사업: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 유지

1. 지원대상(조건)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무연고 독거노인
-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노인

2. 지원내용

- 장례지원서비스 : 상주역할, 장례상차림, 장례식장 지원 등
- 장수(영정)사진 제작 지원 : 장례 행상에 필요한 사전 영정사진 촬영, 제작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독거노인 사망자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관(경찰 등)이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무엇을) 연계 및 인수하여
(어떻게) 시군구청에서 승인 후 서비스 제공(무료)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홀몸 노인 일일 방문 사업

관심이 필요한 무의탁 홀몸노인 등에 대해 1일 1회 방문을 통하여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1. 지원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 만 60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중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 보호가 필요한자
- 우선순위
 - 1순위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 3순위 : 기타 특별한 사유로 방문보호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 주민 등

2. 지원내용

- 1일 1회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및 생활안전상태 확인
- 야쿠르트 1세대 1일 2개 또는 우유 1개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대상자에게
 - (언제) 연중 상시
 -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야쿠르트 직매소와 계약 체결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 담당부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

1. 지원대상(조건)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무관하게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 1순위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2순위 : 노인장기요양(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기타 : 그 외 지자체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응급안전서비스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선정 가능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등의 사유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1순위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및 중증 독거가구 수급자
- 2순위 : 중증 취약가구 및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기타 :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 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2. 지원내용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시스템 설치·운영 : 가스 화재 활동감지 및 응급호출버튼 등
- 정기적인, 수시 안전 확인 및 장비점검
- 지역사회 인적자원 발굴·연계 통한 응급안전망 구축
- 댁내 응급시스템 관리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서비스 대상자 사전 선발 후 자격 심사하여 서비스 제공

(누가) 독거노인 현황조사에서 발견된 대상자 또는 기관에서 의뢰한 대상자가
(언제) 연초

(어디로) 자치구청으로

(무엇을)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신청서 등을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생활관리사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자격확인 후
서비스 제공을 결정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및 자치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압축적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지원내용

-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생활관리사 서비스)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 공공 및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연계 지원
 - 월 1회 이상 보건·복지·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교육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 장례지원서비스 : 상주역할, 장례상차림, 장례식장 지원 등
 - 장수(영정)사진 제작 지원 : 사전 영정사진 촬영, 제작 등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 사랑잇는 전화 : 주2회 안부확인 전화, 정보 제공, 긴급출동시스템운영
 - 마음잇는 봉사 : 방문봉사 결연, 후원물품지원, 월1회 방문 봉사 실시
- 노인상담전화 : 평일 07:00~21:00 / 토요일·휴일 09:00~18:00 등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 (무엇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 (어떻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http://1661-2129.or.kr/>

건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때

1.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2. 눈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3. 그 외 신체(귀 등)가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4. 방문해서 진찰해드립니다.
5.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6. 기타 건강관리를 도와드립니다.
7. 기타 필요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치주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 세정술을 실시하여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하여 치근면 우식예방 및 시린이를 방지하기 위함

1. 지원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우선)

2. 지원내용

-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치과의사(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
- 대상자 구강건강상태, 전신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시행
 - 치주치방법- 스케일링 : 치아의 이동성이 없는 경우
전문가 치면세정술 : 치아의 이동성이 있는 경우
 - 불소도포방법 : 치아 직접 도포(치아수가 적은 경우, 10개 이내), 트레이, 이온도포기 이용 도포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 (언제) 공지된 신청 기간 동안
 - (어디로) 보건소(보건지소)로
 - (무엇을) 신청서 및 의료보험 카드를
 - (어떻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노인 틀니 지원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1. 지원대상(조건)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기준	
전부의치 대상자	1순위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하악 중 한 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분의치 대상자	1순위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내용

- 틀니(의치) 제작 지원
 - 완전의치(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 완전틀니'에 한하여 급여 적용
 - 부분의치(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클래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에 한하여 급여 적용
- ※ 금속구조물은 코발트크롬 금속류에 한함.
- 틀니(의치) 사후관리
 - 시술 후 1년간은 무료 관리
 - 이후부터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 일부 지원(1년 최대 20만원)

- 급여적용기간 : 7년 이내 1회(1약당)
- 본인부담적용
 -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성) : 20%
 -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 : 30%
 - 건강보험 : 50%
- ※ 만 75세 이상의 경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본인부담액만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사전에 등록한 후 시술 받아야 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거주지 보건소(1차)로
 - ※ 보건소에서 안 될 경우 2차 치과의원, 국/공립병원 치과 등으로 의뢰
 - (무엇을) 노인복지(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증,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을
 - (어떻게) 방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4

노인 임플란트 지원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의치시술 지원 및 사후관리로 구강기능 회복 및 노년기 삶의 질 제고

1. 지원대상(조건)

- 만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2. 지원내용

- 임플란트 시술에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시술비의 일부 지원(일부 본인부담)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가능
 -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 서비스 비용(본인부담률)
 - 건강보험적용자 : 50%
 -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20%, 2종 30%
 -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없음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사전에 등록한 후 시술 받아야 함.
 - (누가) 1차 구강검진에서 선정된 대상자가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건강보험적용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 의료급여수급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무엇을) 대상자 등록 신청을
 -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스마일재단 치과치료지원사업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치료비 및 치료과정 지원

1. 지원대상(조건)

- 치과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 사업별 상이)

2. 지원내용

- 2015년 기준(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구분	저소득 성인 보철지원사업 「희망드림6」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지원사업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보철치료가 필요한 개인	보철치료가 필요한 개인(장애인)	전신마취 하에 치과진료가 필요한 개인(장애인)	구강암·얼굴기형으로 치과적 수술이 필요한 개인
조건	- 스마일재단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 만25세~55세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잔존치아 14개이하	- 스마일재단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 등록장애인1~3급 - 만18세~64세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잔존치아 10개이하	-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1,2종 또는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200%이내)
범위	1인당 보철치료비 최대 300만원	1인당 보철치료비 최대 250만원	최대 200만원 (보철치료비 등 포함)	최대 1,000만원 (보철치료비 등 포함)
방법	등기우편		협력병원 담당자와 상담 및 초진을 통해 신청	

※ 임플란트 및 교정진료 제외, 조건 모두 충족시킬 경우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해당기간에 맞추어

(어디로) 스마일재단 또는 협력 병원으로

(무엇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어떻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스마일 재단 ☎ 02-757-2835 / www.smilefund.org

※ 협력병원 현황(2015년 기준)

병원명	연락처	주소
따뜻한치과병원	02-523-2835	동작구 사당동 1042-12 보광빌딩 3층
이엔이치과	02-598-9075	서초구 서초대로 302 인앤인빌딩 4, 8층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02-6912-7660	성동구 마장로 207
더스마일치과의원	02-6925-4815	영등포구 영시로40길, 나로센터 5층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02-440-6589	강동구 상일동 149번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02-958-9663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2-2228-7042	서대문구 신촌동
고려대학교안암병원치과	02-920-5896	성북구 안암동 126-1
이대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02-2650-5260	양천구 목동 911-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2-2072-0667	종로구 연건동 275-1

노인 실명 예방 안검진 지원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
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1. 지원대상(조건)

-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수급자
 -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만 60세 이상의 노인
- ※ 우선순위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2. 지원내용

- 안검진 내용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처방 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 검진 비용 : 43,0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수요 파악 기간 동안 (2014년 기준 1~2월)
 - (어디로) 거주지 보건소로
 - (무엇을) 검진 신청을
 - (어떻게)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접수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088, 1102 / www.kfpb.org

노인 실명 예방 개안수술 사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1. 지원대상(조건)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보건소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거주지 보건소로

(무엇을) 노인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안과진료의뢰서(진단서), 등본, 건강보험증, 보험료납부영수증 등을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준비

(어떻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088, 1102 / www.kfpb.org

장애인보장구 지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하여 편안한 생활 지원

1. 지원대상(조건)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 후 이용 가능

- 대상 :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적합한 자
- 절차 및 구비서류
 - 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 ② 장애인진단서 발급
 - ③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장애인진단서 원본 및 관련자료 1부
 - * 만 17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명함판 사진 1매 함께 제출
 - * 신청 전 진단받은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가능
 - ④ 장애 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약 1달 소요)
-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

- 장애인 등록 여부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등록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일부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보장구 유형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 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비고 1.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제외

2.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보장구 유형별 처방전 발급시에만 해당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대상자 및 피부양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무엇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등을

(어떻게) 전화로 사전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www.nhis.or.kr

보건복지콜센터 ☎ 129 / www.129.go.kr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시청자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 조성

1. 지원대상(조건)

- 청력손실 41~59dB 해당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청력장애등급자 제외)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 우선순위 : 저소득층 > 독거노인 등 난청노인 > 기타 일반 난청노인
 - ※ 지역별 균형배분을 위해 수도권 보급비율은 40% 이내로 한정

2. 지원내용

- 난청노인을 돕기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 (음성증폭기)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수신기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사업기간 동안
 - (어디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선정한 수행기관으로
 - ※ 해당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무엇을) 무료 보급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청력검사결과진단서 및 소견서를
 - (어떻게) 이메일, 우편접수로 신청
- 담당부서 연락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688-4596

www.kaswcs.or.k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070-7873-1246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96 이연빌딩 3층

(이메일) kaswcs@hanmail.net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노인 등 건강요구도가 높은 주민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건강보험부과 하위 20%)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 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한 건강위험군, 질환군

- 대상자 분류

집중관리군 (6~10회 방문/2~4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만성질환자 - 건강문제가 있고,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 - 건강위험군이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등 - 고위험 허약노인 - 감염성 질환이 있고,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정기관리군 (1회 이상/2~3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위험군)
자기역량지원군 (1회 이상/4~6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정상군)

2. 지원내용

- 보건소 내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간호 : 기초건강검사, 투약 및 식이요법, 운동요법, 질병예방,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 경로당 방문간호 : 혈압, 혈당 측정, 사업대상자 발견, 만성질환 관리
 - 보건소 내 사업 및 유관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 이동목욕, 이미용서비스, 도시락배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대상으로 판단되면, (대상자 사전 선발)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거주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 (무엇을) 해당 명단을
 - (어떻게) 연계 의뢰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7129

영구임대아파트 으뜸이 진료 봉사

경제적 약자인 시민고객에게 대한 의료보건 문제의 해결에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 SH공사 임대아파트 어르신들과 인근지역 시민고객들의 건강증진과 재활의지를 도모

1. 지원대상(조건)

- 임대아파트 입주민 및 시민고객

2.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은 해마다 변경 가능
 - 한방 : 침·뜸·한약 처방 등 한방진료 및 약재 처방
 - 양방 : 어르신 치과진료
- 팀별 봉사일정에 따라 서울시내 복지관 순회봉사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신청 기간 동안
 - (어디로) 해당 복지관으로
 - ※ 한방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노원종합사회복지관, 남산타운 경로당, 하계5단지 경로당
 - (무엇을) 신청을
 -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SH공사 ☎ 1600-3456 / www.i-sh.co.kr

재가 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간
호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킴

1. 지원대상(조건)

- 재가암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재가암환자 및 가족
 - 대상 구분 : 지역사회 가정에 있는 치료중인 암환자, 치료가 끝난 암생존자, 말기암환자
- ※ 우선순위 : 동일 조건일 경우 취약계층 암환자와 말기암환자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기본 서비스 영역
 - 환자평가, 체위 및 안위간호, 적절한 치료를 위한 환자 및 가족교육, 투약 지도, 영양 및 운동교육, 비약물적 통증완화요법, 증상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의사의 진료 및 처방
 - 증상 및 통증조절 : 통증 및 증상조절, 물리치료, 수액요법, 필요시 의료기관 과 협조하여 약물처방
 - 특수간호 : 특수 장치 소독 및 관리, 관장, 관절운동, 산소요법, 욕창관리 등
 - 사회적, 정서적, 영적지지 : 불안, 우울, 두려움 등에 대한 정서적지지, 종교 단체 연결 등 영적지지, 암환자 자조모임을 통한 상호지지 및 정보교류 기회 제공, 심리적 문제 해결
 - 자원봉사자 서비스 : 신체간호, 심리간호, 영적간호, 가사일 보조, 차량봉사, 지역사회 내 재가암환자 발굴 및 연계, 기타(물리치료 보조 등)
 - 임종지지 : 사별가족에 대한지지, 사별가족 모임 알선, 지역암센터 및 호스피스기관 등 지역내 완화의료기관 및 종교단체와 연결
 -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 환자 상태별 서비스

치료중인 암환자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 원칙)	- 병증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음을 인식, 반드시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지속적,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 교육 - 서비스 수혜자에게 암치료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파악, 증상개선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심리적지지 및 교육 - 암치료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파악, 지역사회 지원 체계 연결 - 재가암환자에 대한 가족지지 체계 파악 및 상담 - 병증에 따라 재평가 및 군 분류를 변경
치료가 끝난 암생존자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 원칙)	- 암 치료 종결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자로 주로 의료기관에서 재발 여부를 추적 검사하는 경우 - 2차암 예방교육 및 증상완화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등 재가 암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개발 제공 - 사회적 지지 서비스 : 의료비 지원정보 제공, 외부 후원기관 연계, 직장복귀 및 재취업 - 심리적 문제 해결 :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 - 정보 및 교육제공 : 스스로의 건강관리, 식생활 정보 제공 - 적절한 만성질환관리 :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 연계 - 건강위험요인 조절 : 금연, 절주, 체중 및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 의료기관에서의 주기적인 검진권고
말기암환자 (월 2회 이상 방문 원칙)	- 의료기관에서 말기 암이라고 진단받은 환자 - 환자평가 : 활력징후측정, 통증점수평가, 일상생활능력, 말기 인식여부, 심리상태, 의식정도 평가 등 - 정서적, 영적지지 : 본인이 믿는 종교나 자원봉사자 연계 - 체위 및 안위간호 : 구강간호, 안전간호, 체위변경, 운동지도 등 - 투약 지도 : 연고도포, 처방받은 내복약 복용 - 비약물적 통증완화요법 : 냉온요법, 이완요법 등 - 통증 및 증상 조절을 위한 의사의 진료 및 처방 - 사회적 지지 : 의료비 지원정보 제공, 외부 후원기관 연계, 의료용품 지원 - 임종지지 : 지역암센터 및 호스피스기관 등 지역 내 완화의료 기관 및 종교단체와 연결 - 사별가족에 대한 지지, 사별가족 모임 알선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지역사회 내 관리요청, 의료
기관의 의뢰를 통한 대상자 등록 가능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가암정보센터로

(무엇을) 서비스 이용 문의를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암정보전화상담 ☎ 1577-8899

(평일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자동응답서비스)

암정보인터넷서비스 www.cancer.go.kr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

1. 지원대상(조건)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②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③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상 확인되는 자
 - ④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급여 지급
: 진찰·검사, 약제·치료제 지급, 처치·수술 등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그 밖의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비급여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의 경우 항목별로 50~80% 본인부담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수급권자 또는 병의원의 의뢰 또는 본인 및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거주지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를

(어떻게) 방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기타 지원 제도

①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금액 보상(노인 틀니 제외)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②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보상(노인 틀니 제외)
※ 지급 금액 2,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보상
• 2종 수급자 : 매 6개월간 6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보상
③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교 재학 중인 자, 임산부, 장기 이식환자 등의 경우 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④ 선택 병의원제
: 1종 수급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⑤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한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
⑥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수급자에게 매월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 통장(가상계좌)에 입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1. 지원대상(조건)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자
 - 소득기준 :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부양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2.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

구 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 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7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7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 본인 또는 기타 대리인이

※ 기타 대리인 :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재산관련 서류 등을

(어떻게) 방문하여 직접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어르신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원외약국 약제비를 지원하여, 보건소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1. 지원대상(조건)

- 자치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2. 지원내용

-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액 1,200원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약국에서 보건소로 청구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별도 신청은 없음.

반드시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처방전 발행해야 함.

(누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건소 발행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보건소로

(무엇을) 조제비 청구 신청을

(어떻게)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서울시 건강증진과 ☎ 02-2133-7584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소득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및 의료비지원 단체·기관을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복귀를 도움 (한국의료지원재단)

1. 지원대상(조건)

- 의료기준
 - 특정질환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 ※ 단 긴급성(미치료시 생명유지에 문제가 발생)이 있는 환자 우선지원
 - 현재 입원치료 중인 환자
 - ※ 진단 및 검사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불가
 - ※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기준 100~120% 이내의 차상위계층 환자 우선
 - 최저생계비 120~250% 이하인 저소득 환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신청 불가
- 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재산기준 내 범위인 자
 - ※ 주택, 임대보증금, 토지, 자동차, 현금 및 은행예금, 부채를 포함

2.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300만원 이내
- 입원일로부터 퇴원 시까지 발생하는 1회의 수술비 및 치료비
 - ※ 현재 입원 중인 질환·의료비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및 해당 지원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
 -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의 치료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병원 사회사업팀 사회복지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 불가

(언제) 연중 상시 (배정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매주 금요일까지 접수, 다음주 금요일까지 통보

(어디로) 한국의료지원재단으로

(무엇을)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신청서	- 2015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의료 상황 확인 서류	- 진단서(향후 치료계획 자세히 기재 요망) - 중간 영수증(입원치료비 영수증)
경제상황 증빙 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앞면 및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 명시, 압축기장 불가)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 비과세 증명서 - 보험 가입자는 보험약관서(미첨부시 심사 불가) - 부채 증명서 등 ※ 기타 경제상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의료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어떻게) 우편으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한국의료지원재단 ☎ 02-2090-974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9(삼각동 115) 경기빌딩 12층 1201호

한국의료지원재단 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 100-200)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 치료율을 높임

1. 지원대상(조건)

① 소아 암 환자

- 만 18세 미만인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만 18세에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의 30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규모별 최고 재산액의 300% 이하
 - 질병기준 : 모든 암

② 성인 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암환자 (1차 검진 필수)
 - 소득기준 : 직장보험료 85,000원 이하, 지역보험료 89,000원 이하인 자
 - 질병기준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등 5대 암
- 의료급여 수급자 (1, 2종),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 질병기준 : 모든 암
- 원발성 폐암 환자(C34)

2.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 환자	성인 암 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지원 금액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외: 2,000만원 (이식 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급여 200만원	정액 100만원 *치료비 발생 여부 무관
지원 항목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정액금 지원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암 환자 및 보호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로

(무엇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어떻게) 방문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암정보전화상담 ☎ 1577-8899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1. 지원대상(조건)

-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
- 건강조건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1. 적응증 :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의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IV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III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티오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소득조건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40%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지원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 한쪽 무릎 기준임
-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내 관련 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보건소로
 - (무엇을) 지원신청서, 진단서(진료의뢰서), 등본, 건강보험증, 보험료납부영수증 등을
 - (어떻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
 - (전화) 02-711-6599
 - (FAX) 02-3210-3388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대한노인회중앙회 내)
 - (이메일) ok6595@naver.com

노인 국가예방접종서비스

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완전접종을 향상-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적기접종으로 인공면역을 최대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

1. 지원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

2. 지원내용

- 지원백신
 - 보건소 :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노인폐렴구균, 인플루엔자
 - 보건지소 :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노인폐렴구균, 인플루엔자
 - 보건진료소 : 인플루엔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접종 실시기간 동안
 - (어디로) 거주지 보건소로
 - (무엇을) 예방접종 접수를
 - (어떻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1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
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1. 지원대상(조건)

- 사업 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일반 주민
 -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가구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장애인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2. 지원내용

- 필수사업 :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대사증후군 등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 기타사업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 흡연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영양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 진료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거주지 보건소로

- (무엇을) 희망 서비스 신청을

- (어떻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09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의 실시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한의학진료서비스 및 한의학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지원대상(조건)

- 지역주민

※ 우선순위 : 의료취약계층,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2. 지원내용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상자군별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하며, 우선사업 2개 및 선택사업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

대상자별 구분		프로그램 종류(예시)	프로그램 내용
우 선 사 업	중풍예방 관리군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질환자)	한의학 중풍 프로그램 한의학 심혈관질환관리 프로그램 한의학 대사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	사상체질 분류 한의학기공체조 교육 한의학식이 교육 한의학양생 실천
	골관절계 질환 예방 및 관리군 (다발성 통증, 만성골질환 및 위험군)	한의학 골관절 프로그램 한의학 (관절)통증 프로그램 한의학 갱년기관리 프로그램 등	사상체질 분류 한의학기공체조 교육 한의학식이 교육 한의학양생 실천
선 택 사 업	면역기능 관리군 (암, 아토피 등)	한의학 아토피 프로그램 한의학 암질환 프로그램 한의학 갱년기관리 프로그램 등	사상체질 분류 한의학기공체조 교육 한의학식이 교육 한의학양생 실천
	정신보건관리군 (치매, 우울증 등)	한의학 치매예방(노인대학) 프로그램 한의학 스트레스 프로그램 한의학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사상체질 분류 한의학기공체조 교육 한의학식이 교육 한의학양생 실천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해당 보건소로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7129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시범)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 향상 및 적정관리를 통한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발생 억제와 발생시기 지연 서비스

1. 지원대상(조건)

- 필수대상 :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권고대상 :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 일부 지역 시범사업 : 서울시 성동구 등

2. 지원내용

- 등록 대상자들의 관리기록 전산화 환자 개인별 질환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치료 일정 및 누락 일정 안내 등
- 65세 이상 환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로 치료비 감면(정액 지원)
 - 환자 1인당 3,500원/월(진료비 1,500원/인, 약제비 2,000원/질병)
- 치료 일정 및 치료 누락 일정을 알리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 개인별 진료정보를 전화, (전자)우편, SMS, ACS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제공
- 고위험군 집중관리 서비스 : 질환 및 영양 교육, 상담서비스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보건소 또는 민간병원에서
 - (무엇을) 진료를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 (어떻게) 연계 의뢰를 통해 신청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712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1. 지원대상(조건)

- 소득조건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
- ※ 우선순위
 - 1순위 : 장애등급 1~2급, 노인장기요양 1~3등급
 - 2순위 : 장애등급 3급 이하, 노인장기요양 4~6등급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내용
 - 건강상태 점검 :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및 전문가 상담
 - 운동프로그램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서비스 방식
 - 건강상담 : 월 1회, 회당 10분 이상
 - 수중운동 : 주 3회(월 12회), 회당 70분, 20인 이하
- 서비스 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정부지원금 9만원 / 본인부담금 1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모집 기간에 맞추어

(어디로) 해당 자치구청으로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csi.welfare.seoul.kr

자치구 담당부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저소득 건강증진서비스

u-Health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인들의 생활 습관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 만성 질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1. 지원대상(조건)

- 소득조건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조건 : 만 20세 이상 성인
- 건강조건 : 대사증후군 관련 항목 중 1개 이상 유소견자(다(多)순위 우선)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u-Health 장비 활용 건강측정	- 개별기기형 : 개인별 u-Health 측정장비 지급 및 측정	월 1회 주 2회
		- 공용부형 : u-Health zone 설치 장소에서 제공, 개인별 활동량계 지급 및 측정	월 1회 주 1회
	개인별 건강관리 모니터링 결과 및 건강 정보 제공	- u-Health 데이터기반 상시 모니터링 - 건강정보 SMS 발송 - 건강측정 결과 및 변화추이 e-mail 발송	월 4회 이상
	맞춤형 상담 및 교육	- 개인 맞춤형 영양 및 식단, 운동 습관 개선을 위한 1:1 전문 상담 및 교육	월 1회 (30분이상)
부가서비스		- 건강평가(의료기관과 연계), 집단 건강 교육 등	

- 서비스 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서비스 가격
 - 개별기기형(재가방문형) : 월 11만원(정부지원 99천원 / 본인부담 11천원)
 - 공용부형(기관방문형) : 월 7만원(정부지원 63천원 / 본인부담 7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모집 기간에 맞추어
 - (어디로) 해당 자치구청으로
 -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 (어떻게)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csi.welfare.seoul.kr
자치구 담당부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소득조건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조건 : 만 60세 이상 성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건강조건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서비스 방식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재가 또는 기관 방문
- 서비스 기간 : 10개월 (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서비스 가격 : 월 136천원 (정부지원금 124천원 / 본인부담금 12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모집 기간에 맞추어
(어디로) 해당 자치구청으로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csi.welfare.seoul.kr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건강콜센터

일상적인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정보서비스를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전문의 건강상담시스템으로 건강생활 도모

1. 지원대상(조건)

- 건강정보 또는 상담이 필요한 모든 서울시민

2. 지원내용

- 24시간 365일 전문의 건강상담 및 의학상담 서비스 제공
 - 24시간 전문상담체계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 상주
 - 전문의 필수분야(응급의학,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등) 건강상담
 - 구체적인 질병 및 증상 등 문의시 의학정보 제공,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등 전반적 건강에 대한 내용
- 외국인 응급·진료 의료통역 및 정보제공
 - 전문인력을 통한 주요언어(영, 중, 일) 응급 진료 의료통역 제공
 - 외국어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안내
-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서울시청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건강상담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서울종합방재센터 통합의료상담실로 (서울대병원 연계)
 - (무엇을) 상담 신청을
 - (어떻게) 전화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건강콜센터 ☎ 119

health.seoul.go.kr/healthcal

서울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 및 권리 보호

1. 지원대상(조건)

- 의료서비스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2. 지원내용

- 진료 불성실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상담원의 전화상담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 시행)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안내 및 연결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평일 09:30~18:30
(어디로) 서울시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로
(무엇을) 상담 신청을
(어떻게) 전화로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 ☎ 1899-9350

돌봄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때

1.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해드립니다.
2. 집에서의 돌봄을 지원해드립니다.
3. 기타 돌봄을 도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1. 지원대상(조건)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3~5등급 : 재가급여(단,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경우 사용 가능)

2.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서비스 비용
 - 일반수급자 : 시설급여비용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 10% 부담(50%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면제)
- ※ 비급여 : 식비, 이미용비용 등은 100% 본인부담

3. 신청방법 및 문의

※ 급여 이용신청 전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
(누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리인 가능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어디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무엇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대리인 신청 :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어떻게)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접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장기요양등급자 및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언제) 장기요양등급판정 후 연중 상시

(어디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무엇을) 장기요양인정서 및 서비스이용신청서

※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어떻게)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접수

- 담당부서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www.li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1. 지원대상(조건)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 ※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지원내용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구성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가사지원(빨래, 식사준비 등) 미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1~4등급 : 월 한도액에 상관없이 월 1회 이용가능
 - ※ 5등급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월 1회 이용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 가능)

※ 복지용구종류

구입품목(9종)	대여품목(8종)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함	-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대여
연 160만원 이용 가능	

- 서비스 비용

- 일반수급자 : 재가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 7.5% 부담(50%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면제)
- 복지용구(적용 비율은 동일함)

구입품목(9종)	대여품목(8종)
- 구매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연 160만원 이용 가능	

※ 비급여 : 식비, 이미용비용 등은 100% 본인부담

3. 신청방법 및 문의

※ 급여 이용신청 전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
(누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리인 가능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어디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무엇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대리인 신청 :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어떻게)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접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장기요양등급자 및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언제) 장기요양등급판정 후 연중 상시

(어디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무엇을) 장기요양인정서 및 서비스이용신청서

※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어떻게)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접수

- 담당부서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www.lingtermcare.or.kr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1. 지원대상(조건)

	연령 기준	건강 기준	소득 기준
방문·주간 보호서비스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A, B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 (차상위 계층 이하)
단기가사 지원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부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우선순위 : 독거노인 > 치매환자 > 기타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등급외 A > B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 받고 있는 자 제외

단, 단기가사지원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중복 가능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유지, 화장실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보호자 입회에 한 함) 등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주간 보호서비스	심신기능 회복 : 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 서비스 등
단기가사 지원서비스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서비스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 서비스 비용(전국 평균소득 기준)

	방문주간보호		단기가사지원	치매가족휴가지원
서비스 시간	월27시간 (9일)	월36시간 (12일)	월24시간	연6일 범위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8,280원	무료	무료
차상위 계층(120%)	18,000	24,000	16,000	(일)2,5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37,000	49,000	33,000	(일)5,100원
100%이상 ~ 130%미만	42,000	56,000	38,000	(일)5,800원
130%이상 ~ 150%미만	48,000	64,000	42,000	(일)6,5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본인 또는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권)

(언제) 매월 1~18일 (공지된 기간에 맞추어)

(어디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등을

(어떻게)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 129

데이케어센터(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신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 및 부양가족에게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면서 일상생활 중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운영시간을 확충하여 치매노인 보호와 보호자의 경제활동 및 정신적 부담감 경감

1. 지원대상(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3등급판정 어르신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 불편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2. 지원내용

- 거동 불편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재가노인 및 부양가족에게 낮 시간 동안 보호 및 일상생활서비스 제공

맞춤케어서비스		안심케어서비스	
건강지원	이용자의 영양실태, 건강 및 질병상태 관리	응급상황 관리	시설의 안전설비, 사고대책, 전염병대책 등 실행
치매대응	치매증상 및 행동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지원	청결·위생관리	이용자 신체 및 시설내부 환경 청결서비스 지원
기능회복	물리·운동·작업치료 등 신체 기능 회복 프로그램 운영	건강체크 시스템	개별상황에 따른 건강관찰 및 투약관리 숙지
여가지원	즐거운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 가격

- 등급자 : 일반 15%
차상위 및 의료급여대상자 7.5%
기초수급자는 무료
※ 식대 별도 부담
- 등급외 : 일반 월 342천원(20일 한도 이용기준, 주간 중식비 포함)
차상위 월 171천원 (50% 감면)
※ 석식 및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이용: 별도 산정, 수납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시설 이용 희망 가족이

(언제) 시설 운영시간에 맞춰(08:00~22:00)

(어디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로

(무엇을) 신청서를

(어떻게)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노인복지과 ☎ 02-739-9501~3

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경제·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간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등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보장으로 예방적 복지시설 및 사회안전망 강화

1. 지원대상(조건)

- 저소득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외자
- 60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
- ※ 단,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자도 가능
- ※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또는 동일서비스 중복 불가
-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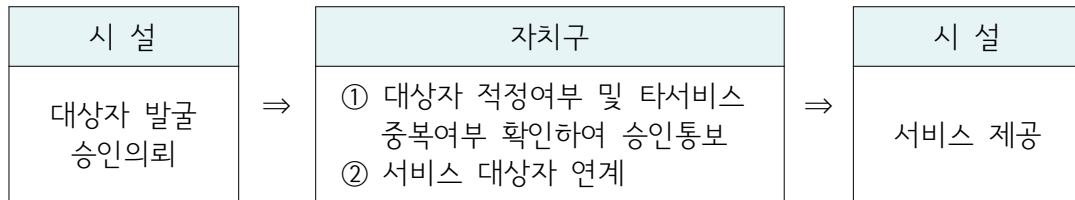
2. 지원내용

사 업	프로그램	서 비 스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 • 김장서비스	• 이·미용서비스 • 명절·생신, 차량이용서비스 • 유무급봉사원파견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가사간병서비스	
	정서지원	•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서비스 • 방역 • 보일러수리서비스	• 변기수리, 집수리서비스 • 편의시설개보수(문턱제거등)
	여가활동지원	• 나들이서비스	•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개발	• 후원·결연서비스	•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 노-노케어서비스 •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 장수사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개안수술, 건강검진서비스 • 의료연계서비스 •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 업	프로그램	서 비 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교육지원	• 임종, 보호자교육 • 응급처치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 지역재가협의체구성	• 사례관리
긴급지원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 위기지원서비스 • 무선페이징서비스¹⁾	• 응급호출서비스 •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희망자 또는 대상자를 발굴한 시설이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해당 지역 재가노인지원센터로

(무엇을) 서비스 신청을

(어떻게)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의뢰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재가노인지원센터

1) 거동불편 어르신이나 독거어르신을 위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위급상황에서 간단히 발신기(리모컨)의 버튼만 누르면 수혜자의 위치, 성명, 전화번호, 병상기록 등이 자동신고 되면서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노인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1. 지원대상(조건)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 도서벽지 거주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 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정신장애인 :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

2.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급여 이용신청 전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
(누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리인 가능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어디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무엇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대리인 신청 :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어떻게)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접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장기요양등급자 및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언제) 장기요양등급판정 후 연중 상시

(어디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무엇을)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어떻게)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접수

- 담당부서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www.li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혜택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완화 도모

1. 지원대상(조건)

-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자로
-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제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부담금 전액 혜택을 받는 자

2. 지원내용

- 1~3등급별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 ※ 주야간보호의 경우 1일 8시간, 월 20일 이용시 본인부담금에 한함.
-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는 제외함.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자치구별 지정된 대상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무엇을) 본인부담금 제공(변경)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어떻게) 방문하여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다산콜센터 ☎ 120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1. 우울하거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도와드립니다.
2.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전문적 상담과 원조를 통해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

1. 지원대상(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및 가족

2. 지원내용

- 상담사업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자살예방상담	우울, 자살충동에 관한 상담
노년의 성	건강한 노년의 성 상담센터(노년기 성에 관한 전문 상담)
화 다스리기	가족갈등, 폭력학대에 대한 상담
정서심리상담	치매건강, 중독, 고독정서에 관한 상담
경제생활상담	경제적 빈곤, 노후생활정보와 관련된 상담
연계전문상담	법률, 세무, 소비자, 재무, 금융, 전문기관연계를 통한 상담
위기지원 및 사례관리	위급한 상황 시 긴급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위기개입 상담
심리검사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 성격, 인지검사

- 온라인상담 : 전화 또는 사이버상담
- 열린 상담강좌 : 전문가 특강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 치매, 노후 재산관리, 상속, 소비자 피해사례, 행복한 노년의 성,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대화법 등
- 사례관리
- 교육사업
 - 노인상담전문가 양성
 - 상담실천가 특강
 - 동년배상담가양성과정

- 인식개선사업

- 찾아가는 이동상담 : 탑골, 종묘공원, 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밀집지역, 이동순회상담 신청 지역에서 이동상담서비스, 인식개선활동, 안마서비스, 아로마향기서비스 등 제공
- 캠페인 : 노년기 우울증 예방 캠페인, 자살예방 캠페인 등
- 사축제 '사는 기쁨' : 생애회고전, 유언장 쓰기, 입관체험, 열린상담부스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평일 9:00~18:00, 토요일 09:00~13:00)

(어디로)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로

(무엇을) 상담 신청을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 온라인으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 02-723-9988

www.seoulfriend.or.kr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포괄적인 관점으로서의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

1. 지원대상(조건)

- 자살예방 상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관내 타 지역주민에게도 관련 서비스 제공 요망)

2. 지원내용

- 자살예방 상담, 고위험군 선별 및 사례관리,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도자 지속관리, 지역사회 자살위험대상자에 대한 개입

구분	사업내용
위기관리	1577-0199 24시간 자살예방상담서비스
	고위험 자살의시도자 초기 평가 및 응급 출동
	자살의 · 시도자 위기관리
	야간, 주말 및 휴일 모니터링
	서울시 자살예방교육과정 운영 (자살예방지킴이 → 자살예방응급요원 → 자살예방전문가)
네트워크 및 유족지원	서울형 자살유족 서비스 (24시간 자살유족 마음이음 상담전화 운영, 개별서비스, 애도상담 프로그램, 자조모임 자작나무)
	자살유족 전문가 양성교육
	마음이음 1080 자살예방 브랜드 홍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보급
	언론관리(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시민옴부즈만 운영)
	홍보: 홈페이지 운영, 포럼, 한강교량걸기 대회 등
	자살예방 네트워크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연구집 발간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서울시자살예방센터로

(무엇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2231-2188

suicide.blutouch.net

자살예방·자살유족마음이음 24시간 상담전화 ☎ 1577-0199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Day care), 교육·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

1. 지원대상(조건)

-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
 -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 지역주민
- ※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주여성 및 자녀,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이용

2. 지원내용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재활, 교육 등을 제공함.

구분	사업내용
조기정신증 관리	온라인 기반의 정신증 정보제공 및 검진서비스
	지역기반 조기정신증 집중평가 및 관리 서비스
	초발정신질환자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지원
	터치프렌즈 캠페인
재활지원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촉진사업(직업재활 프로그램)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연계촉진프로그램(사회재활 프로그램) - 집으로캠프
	서울시 주거서비스 전달체계구축
	국·시립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킹
	정신보건 인권문화 증진사업
	인증지표기반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중독관리	반복적 문제음주군에 대한 공공의료 및 지역관리체계 구축사업
	연속적 중독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중독관리서비스 역량강화 사업
	마케팅 및 서비스 개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울시마음건강학교 '서울시 도담교실 프로젝트'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아동청소년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교사 컨설팅 전화 상담 : 스쿨라인(1577-7018)
	아동청소년 온라인 이벤트 및 자가검진 서비스
	학교기반 사후중재 시스템 '희망의 토닥임'
홍보기획	블루터치 브랜드 홍보
	블루터치 네트워크 개발 및 관리
	블루터치 홈페이지 운영
	우울증 자가관리 '마인드 스파' 홈페이지 운영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미디어 관리 및 마케팅사업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무엇을) 초기 상담 및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 02-3444-9934

www.blutouch.net

소아청소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02-2231-2188

정신요양시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1. 지원대상(조건)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
 -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 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2. 지원내용

- 정신과전문의 진료 및 처방
 -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한 운동과 오락 등 프로그램 제공
 -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 서비스 비용(2014년 기준)
 - 입소정원의 30% 안에서 월 301,000원 이하의 입소비용 징수 가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에 한함.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 (언제) 연중 상시 (6개월마다 계속입소심사 실시)
 - (어디로) 정신요양시설로
 - (무엇을) 입·퇴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을
 - (어떻게) 전화 상담 및 방문 문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시설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서울특별시립 은혜로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구산동)	02-3156-6400	www.grace.seoul.kr
서울시립 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031-323-5703~4	www.yeongbo.or.kr
서울정신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22	031-826-3300	www.seoul3300.or.kr

정신의료기관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함으로써 재 활 및 사회복귀 도모

1. 지원대상(조건)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
 -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 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 정신질환 의심자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로서 매우 급박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된 자

입원 종류	근거조문	주요내용	비 고
자의입원	정신보건법 제23조	<입원요건> ○ 본인의 신청+정신과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 본인의 신청(신청서 또는 구두)	•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입원요건> ○ 보호의무자 2인 동의+정신과전문의 진단 ○ 입원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 심사 <퇴원절차> ○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신청서 또는 구두) <보호의무자의 범위-민법974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 •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보완(7일 경과시 퇴원조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 제25조	<입원요건>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 + 정신과전문의 진단 ○ 2주 이내에 정신과의사 2인이 입원진단을 내린 경우 3개월까지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 입원조치 <퇴원절차> ○ 정신과전문의의 퇴원 결정	• 입원 3개월 후 계속입원(3개월, 1회) 심사
응급입원	정신보건법 제26조	<입원요건> ○ 자·타인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자+경찰관의 동의 * 정신과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 입원가능 <퇴원절차> ○ 정신과전문의의 퇴원결정	• 72시간까지 가능, 이후 필요 시 다른 입원종류로 전환

* 각 입원종류별, 단계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지의무가 있음

2. 지원내용

- 정신과전문의 진료 및 처방
- 치료 프로그램, 작업요법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언제) 연중 상시 (6개월마다 계속입소심사 실시)
(어디로) 정신요양시설로
(무엇을) 입·퇴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어떻게) 전화 상담 및 방문 문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구분	병원명	주소	연락처
국립	국립부곡병원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면 부곡로 145	055-536-6440~3
시립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031-288-0114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71번길 30	031-332-3194~6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 172번길 58	031-592-6661~4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02번길 46	031-969-088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자살예방

1. 지원대상(조건)

- 소득조건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 이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
- 기타조건 : 노인 자살위험 검사에 따른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자
- ※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② 노인성 만성 복합 질환 유병 노인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내용

-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대면상담 및 전화상담
-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 : 집단상담, 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 서비스 방식

- 대면상담 : 주 1회(월 4회) 회당 2시간, 1:1 제공
- 전화상담 : 주 2회(월 8회) 회당 2시간, 1:1 제공

- 서비스 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 매월 생성),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 서비스 가격 : 월 115천원(정부지원금 105천원 / 본인부담금 10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모집 기간에 맞추어

(어디로) 해당 자치구청으로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csi.welfare.seoul.kr

자치구 담당부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원대상(조건)

- 소득조건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 연령조건 : 연령 기준 없음
- 건강조건 : 등록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제외)
- ※ 우선순위 : 정신보건센터 연계대상자 우선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내용 : 재가에 방문하여 이용자의 증상과 기능수준에 따라 상담지원, 위기관리 지원, 건강관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 등 제공
- 서비스 방식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1:1 제공
- 서비스 비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18만원 / 본인부담금 2만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 매월 생성), 재판정 2회(최대 3년)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모집 기간에 맞추어

(어디로) 해당 자치구청으로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csi.welfare.seoul.kr

자치구 담당부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흡연자 스스로 금연의지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과정을 통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금연실천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전문상담사를 통한 지역사회기반 금연실천 지원(국립암센터)

1. 지원대상(조건)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2. 지원내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간 서비스 제공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			
	목표	상담일정	상담내용
등록 및 1차 상담	금연성공	금연 시작 전(등록)	금연클리닉 등록 및 금연준비 확인 금연결심 및 금연방법 결정
2차 상담	금연성공	금연시작 1일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3차 상담	금연성공	금연 1주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금연보조제 적합성 점검
4차 상담	금연성공	금연 2주	만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부작용 점검
5차 상담	금연성공	금연 4주	금연보조제의 금연성과 확인
6차 상담	금연성공	금연 6주	금연상담 만족도 평가 재흡연 예방상담
7차 상담	재흡연 예방	금연 8주	흡연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내부의 적 극복하기
8차 상담	재흡연 예방	금연 12주	금연 후 변화인지 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9차 상담	금연유지	금연 24주	금연수료식,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추기관리	금연유지	금연 24주 이후 12개월까지	대면 및 전화상담,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1) 상담 및 행동치료

- ① 9회 이상 금연상담 : 1회 10분 이상, 보건소 내소 전화, 이동금연클리닉,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 ② 니코틴 중독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활용한 흡연상태 평가
- ③ 금연관련 소책자, 금연교구 등을 활용한 흡연과 금연에 대한 정보제공
- ④ 흡연욕구 완화를 위한 행동강화물품 제공

2) 금연보조제(니코틴 보조제) 무료제공 : 6주간 처방 원칙

- ① 흡연량 또는 니코틴의존도 검사결과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 6주간 제공
- ② 필요 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경구용 금연약물 처방
- ※ 지역에 따라, 6개월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보건소를 통해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무료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금연 희망자가

(언제) 금연을 시작하려할 때 (연중 상시)

(어디로) 거주지 또는 방문이 편한 보건소로

※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 우선 고려

(무엇을) 금연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신청

(어떻게)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접수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 보건소

금연상담전화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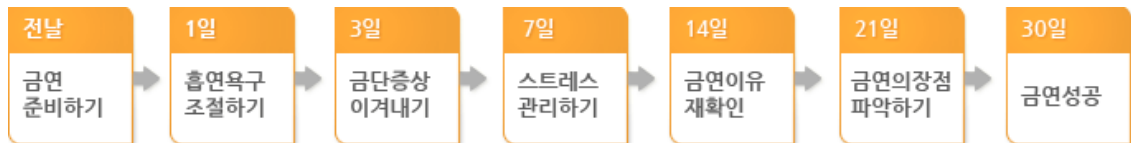
전화 상담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와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연을 감소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1. 지원대상(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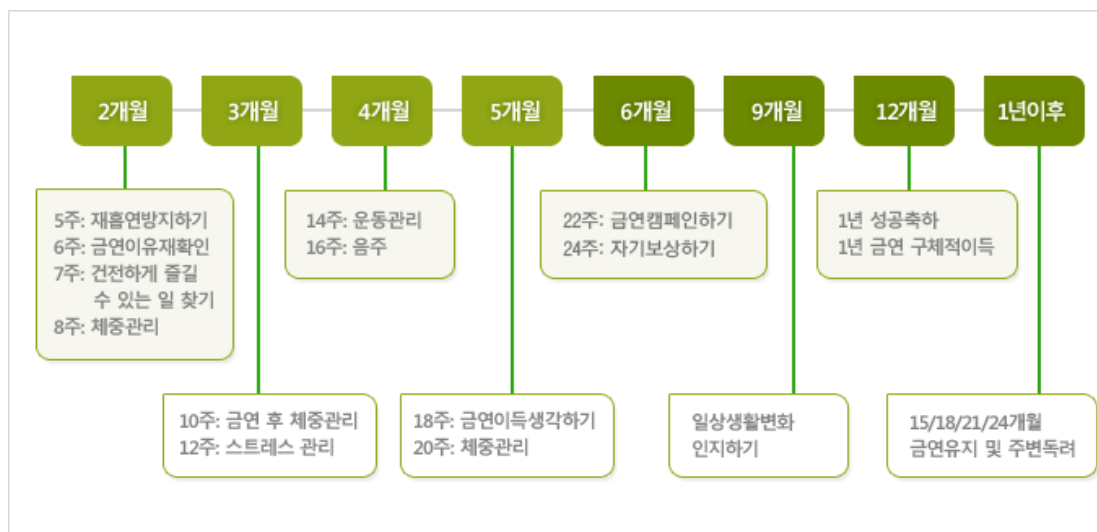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2. 지원내용

- 1년 간 총 14회의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경우에 따라 온라인 상담으로 전환,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운영
- 30일 금연프로그램(첫 상담 ~ 금연30일까지)
: 초기 금연희망자 대상 예약 상담 진행, 그 외 금연지침서, SMS 문자서비스 제공



- 유지프로그램(30일 금연 이후 ~ 금연 1년까지)
: 30일 금연프로그램 성공자가 금연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상담 관리 제공



- 금연 유지 독려 및 재흡연 방지 프로그램
 - : 1년 이상의 금연유지자를 대상으로 금연유지확인 및 재흡연 방지상담 제공, 금연지지자 역할 수행을 위한 동기부여상담 등 제공
 - : 1년간의 금연유지 후 추가 1년간 3개월 마다 1회 상담 (1년간 총 4회 상담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금연희망자가
 - (언제) 전화 : 평일 09:00~22:00 /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자동응답서비스 : 연중무휴 24시간)
 - 인터넷 : 평일 09:00~20:00 (상담신청 후 익일~3일 이내)
 - (어디로) 금연상담전화 또는 금연콜센터(온라인)로
 - (무엇을) 상담 신청을
 - (어떻게) 무료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
- 담당부서 연락처 : 전화상담 서비스 ☎ 1544-9030
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or.kr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내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를 조기발견하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예방 및 건전음주 교육·홍보

1. 지원대상(조건)

- 중독문제(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 등)로 도움이 필요하신 본인 또는 가족, 지역주민

2. 지원내용

- 전문상담 및 재활서비스
 - 내방상담 : 전화 문의 및 예약 후 방문
 -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중독) 선별 검사 : 선별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안내
 - 사례관리 : 초기면담 및 센터 이용 등록 후 정기적인 서비스 제공
 - 단기개입(위기관리 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
 - 가족교육 : 가족들의 중독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 및 대처능력 향상
- 교육 및 홍보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중독관련 예방교육 및 특강 : 아동·청소년, 직장인, 지역주민 등 대상
 - 인식개선 및 예방홍보 사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병원(외래 및 입원) 연계
 - 자조모임(A.A., Al-anon 등) 연계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연계
 - 유관서비스(중독별 치유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기타 심리상담 등) 연계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중독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본인 또는 가족, 지역주민이

(언제) 연중 상시 (평일 09:00~18:00)

(어디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주말에도 가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일상생활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

1. 가사를 도와드립니다.
2. 식사를 도와드립니다.
3. 기타 도움을 드립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1. 지원대상(조건)

-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하며,

- ① 1~3급 장애인
- ②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④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 등 장기 치료자 등)

※ 중복 제한

- 국고지원사업으로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3급 장애인의 경우 탈락자에 한해 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신청자와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재가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내용 :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기간 : 수급결정일로부터 1년(2015년 2월 ~ 2016년 1월)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제공
 - ※ 지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서비스 비용 : 이용시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구 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월 228,000원	228,000원	-
	차상위계층		210,480원	월 17,520원
월 27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월 256,500원	247,050원	월 9,450원
	차상위계층		236,790원	월 19,710원

※ 시간당 9,500원 기준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 (누가)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권신청)이
 - ※ 친족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언제) 연중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등을
 - (어떻게)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 02-2133-7329
 -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xservice.or.kr

단기가사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1. 지원대상(조건)

-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으로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평균의 150% 이하인 자
-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 소득기준(단위: 원, 2015년 기준)

가구원수	전국가구평균 150%이하		
	소득(월)	건강보험료(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307,000	70,377	62,319
2인	4,648,000	141,277	156,072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서비스 기간 : 2개월 이내(1개월 24시간, 2개월 48시간), 주 3회(1회 2시간)
- 서비스 비용

		총 구매력	=	바우처지원액	+	선납본인부담금
월 24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월 235,200원		235,200원		-
	차상위 계층	월 235,200원		219,200원		16,000원
	차상위초과~100% 미만	월 235,200원		202,200원		33,000원
	100%이상~130%이하	월 235,200원		197,200원		38,000원
	130%이상~150%이하	월 235,200원		193,200원		42,000원
월 48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월 470,400원		470,400원		-
	차상위 계층	월 470,400원		438,400원		32,000원
	차상위초과~100% 미만	월 470,400원		404,400원		66,000원
	100%이상~130%이하	월 470,400원		394,400원		76,000원
	130%이상~150%이하	월 470,400원		386,400원		84,000원

※ 시간당 9,800원 기준(7,425원 이상을 돌보미 임금으로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 (누가)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권신청)이
- ※ 친족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언제) 연중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등을
 - (어떻게)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 02-2133-7329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xservice.or.kr

서울재가관리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중증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 60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신규 대상자 선정제외
- ※ 유사서비스(어르신돌봄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지원 제외
-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2. 지원내용

항목	내용	기준시간
가사지원	식사, 청소, 세탁 등 지원	1~2시간 (안부확인 포함)
수발지원	일상생활(식사, 세안, 양치, 약 챙겨드리기, 목욕)	
활동보조	은행, 병원, 관공서, 이·미용실 등 방문	
안부확인	정기적인 안전 확인, 심리적 지지 등	1회 10~30분
서비스 연계	후원물품 및 긴급지원, 민간서비스 등 연계 기타 공공서비스 안내 등	-

- 이용방법 : 1주 1~3회, 비용 무료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본인 및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 (언제) 연중
 - (어디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 (무엇을)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 (어떻게) 동 담당자 및 서울재가관리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여부 결정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 급식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방문, 배달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1. 지원대상(조건)

-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식사배달 :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 밑반찬배달 :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가정에서 조리가 가능한 자
-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③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준용)
 - ④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소득기준은 65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2.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무료 제공, 그 외의 경우 징수 가능

구 분	지원내용	기본급식비(1식)	특식비(1식)
경로식당	주 6회(공휴일 제외), 경로식당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	2,800원, 월평균26일	4,000원, 연7회
식사배달	주 7회(연중 365일), 식사 및 반찬배달	2,800원, 365일	4,000원, 연7회
밑반찬배달	주 2회, 밑반찬 배달	3,500원, 주2회	4,000원, 연7회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어디로) 수행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무엇을) 급식 희망 의사를

(어떻게)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수행기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 제공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

1. 지원대상(조건)

- 복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 차상위 계층, 결식자 등)
- ①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지자체 및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에서 기부식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가대상자
- ② 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중 가정환경조사 또는 상담을 통해 기부식품 제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지자체의 추천 재가대상자
- ③ 3순위(6개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정환경조사 및 상담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가대상자

2. 지원내용

- 푸드뱅크(총 26개소) : 대량기탁, 일괄배분
- 푸드마켓(총 25개소) : 소액물품기부, 대상자 직접 방문이용
- 푸드나눔카페(2개소) : 푸드마켓에 카페기능을 추가하여 상시 기부문화홍보
-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운영, 이용불편자들을 위한 재가택배서비스 확대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서) 자치구청 또는 가까운 푸드뱅크 및 마켓으로
(무엇을)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로 상담함.
- 담당부서 연락처 : 푸드뱅크 ☎ 1688-1377 / www.foodbank1377.org

임대주택 행복한 반찬선물세트

홀몸 어르신이나 취약 이웃의 건강증진과 재활의지를 도모하고 영양 결핍 문제해결에 기여

1. 지원대상(조건)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2. 지원내용

- 해당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주 1회 반찬을 제공
- 사랑의 김장나누기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SH 공사에서
(언제) 연초에 / 연 1회(11월 경)
(무엇을) 대상자를
(어떻게) 직접 선발하여 제공함.
- 담당부서 연락처 : SH공사 ☎ 1600-3456 / www.i-sh.co.kr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혼자서 일상 및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

1. 지원대상(조건)

- 연령조건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만65세 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
- 건강조건 :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기타조건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 또는 퇴원 이후에 급여 지급)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종류

구분		내용
활동 보조	신체활동지원	목욕, 배설, 체위변경, 세면, 식사,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영양상담, 구강위생 등

- 서비스 비용

구분	내용	비용
활동보조	매일 일반적 제공	8,81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 제공	13,210원
	공휴일 제공	13,210원
방문목욕	이동목욕용 차량 내 목욕 제공	72,540원
	가정 내 목욕 제공	65,41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31,76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39,850원
	60분 이상	47,940원

- 바우처 급여(월 한도액) :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하여 바우처 지원

•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급여
1등급	380~470점	1,040,000원
2등급	320~379점	834,000원
3등급	260~319점	628,000원
4등급	220~259점	422,000원

• 추가급여(※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구분		추가급여
1인 및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411,000원
	380점 이상	705,000원
	380점 미만	176,000원
출산가구		705,000원
자립준비		176,000원
직장생활		352,000원
학교생활		89,000원
보호자일시부재		176,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643,000원

- 본인부담금

구분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대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기본급여	면제	20,000원	6%	9%	12%	15%
추가급여	면제	면제	2%	3%	4%	5%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장애등급 심사 관련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등을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등의 경우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어떻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함.

※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신청 가능

-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콜센터 ☎ 1566-0133

장애인활동지원 www.ableservice.or.kr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노인전용구급차

노인구급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응급성 노인구급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하여 노인안전망 구축

1. 지원대상(조건)

-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
- 거동이 불편한 비응급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대형재난 발생시 이송(응급환자 분류상 비응급환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지원내용

- 리프트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이동범위 : 이송대상자의 집 ↔ 의료·요양기관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 및 가족 등이
(언제) 연중 상시(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어디로) 119로
(무엇을) 본인성명, 자택주소, 치료병원, 예약일자 등을
(어떻게) 사전에 전화로 예약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시군구 소방서 ☎ 119

친구 및 문화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을 때

1. 친구를 만들어드립니다.
2.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3. 기타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예방

1. 지원대상(조건)

- 고독사 및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장기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에 한함.

2. 지원내용

-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분류한 후 그룹별 심리치료·건강·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 지원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관계가 단절되고, 공식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등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 제한으로 외출이 어렵고, 우울증 진단받은 독거노인	신체 질환 및 우울증 치료, 집단활동 프로그램 등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집단 정신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 또는 가족, 기타 관계인 등이
- (언제) 별도 공지기간 동안 (2015년 기준 2월 중)
- (어디로) 사업수행기관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 (무엇을) 서비스 이용 문의를

(어떻게) 전화, 방문 등으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

1. 지원대상(조건)

-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등 : 60세 이상 (60세 미만 배우자 동행 가능)
- 경로당 : 65세 이상

2. 지원내용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기타 서비스 제공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 여가시설로서 사회교육, 정서함양, 복리후생, 기능회복, 자원봉사자 육성, 지역복지협동 등 노인종합복지관에 버금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시설
-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해당 기관으로
(무엇을)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가까운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문화통합이용권)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지원

1. 지원대상(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대상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개인 연간 5만원 지원
- ※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 불가
- 사용기간 : 2015년 2월 9일 ~ 2015년 11월 30일 (2015년 기준)
- 사용방법 : 카드이용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제
- 사용처

	장르구분
문화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여행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저
스포츠	프로 4대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배구)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신청 기간에 맞추어 (2015년 기준 2월 9일~4월 30일)

(어디로)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무엇을) 카드 발급 신청을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www.munhwanuricard.kr

저소득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 지원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을 위해 문화복지 혜택의 기회 확대

1. 지원대상(조건)

- 5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노인
- 저소득 · 독거노인 등 문화 소외 노인

2. 지원내용

- 어르신 행복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주관 국악, 콘서트 등 무료 공연
- 문화소외 어르신 문화 공연 관람 지원 : 1,000여명의 저소득 ·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 어르신 및 주변이웃(돌보미, 방문간호사 등), 동거가족에게 문화공연 바우처를 제공하여 공연 관람 기회 확대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관람 희망자가
(언제) 접수기간 동안(별도 공지)
(어디로) 노인복지관, 자치구노인회, 시청 어르신복지과 등에
(무엇을) 관람 신청을
(어떻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02-2133-740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 서비스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소득조건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 이하
- 기타조건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만 65세 이상 노인 (1950년생 이하)

※ 우선순위

- 1순위 : 장애등급 1~2급, 노인장기요양 1~3등급
- 2순위 : 장애등급 3급 이하, 노인장기요양 4~6등급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 서비스 내용 : 전문돌봄인력 동반, 장애인 및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집단활동형)
- 서비스 기간 : 1회성(서비스 신청 후 6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 1박2일을 기본형으로 2박3일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구 분 (연 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장애등급 1~2급,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1~3등급	장애등급3급이하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4~6등급	만65세이상 노인,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
서비스 가격(A+B)	180,000원	165,000원	150,000원	74,000원
정부 지원금(A)	155,000원	140,000원	125,000원	62,000원
본인 부담금(B)	25,000원	25,000원	25,000원	12,0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모집 기간에 맞추어
 - (어디로) 해당 자치구청으로
 -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 (어떻게)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csi.welfare.seoul.kr
자치구 담당부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1. 생계가 어려운 분께 급여를 드립니다.
2. 비용부담을 줄여드립니다.
3. 세금부담을 줄여드립니다.
4.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드립니다.
5. 기타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도움

1. 지원대상(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과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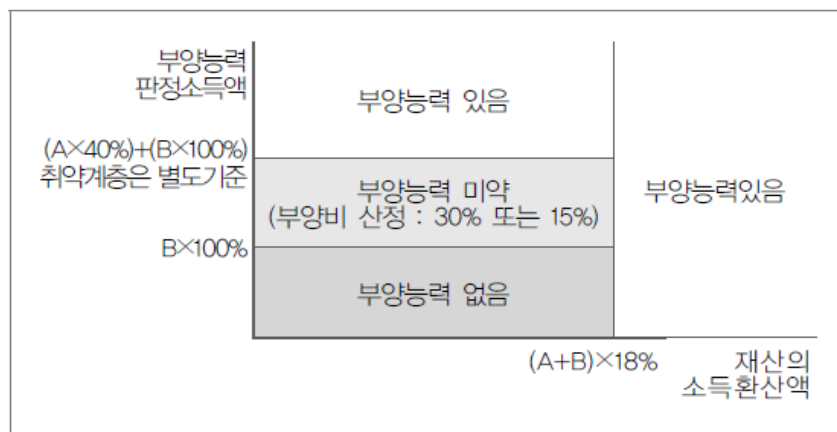
$$\downarrow \qquad \qquad \qquad \hookrightarrow (\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 - \text{근로소득공제}$$

※ 급여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층화 됨

-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 기준중위소득 28%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 기준중위소득 43%
-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 기준중위소득 50%

- 범위 : 수급권자의 1초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A: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며, 부양 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 기준의 추가 완화 (2015년 7월부터 적용)

2.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 발급 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 제작 후 발송
- 카드 수령 : 월 5회 배송(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정부양곡신청 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 · 중 · 고등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고등학교 교과서대: 129,500원/인(연1회) 중고생 학용품비: 52,600원/인 (학기당 26,300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38,700원/인(연1회)	
해산급여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60만원 (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가족	1구당 75만원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 : 1종 / 근로능력 : 2종	

※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

* 현금급여기준(C)=최저생계비(A)－타 지원액(B)

단, 교육·해산·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의료·자활급여는 가구특성에 따라 별도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본인 및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권)이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을
(어떻게) 방문하여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 12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1. 지원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선정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1억
 - 부양의무자기준 :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
 - 기타기준 : 근로능력 없는 가구(18세 미만, 65세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등)
-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2. 지원내용(2015년 기준)

- 생계급여

가구 규모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기준 대비 실제 소득평가액 비율					
	0%이상 33%이하		33%초과 66%이하		66%초과 100%이하	
	소득평가액 (원)	생계급여액 (원)	소득평가액 (원)	생계급여액 (원)	소득평가액 (원)	생계급여액 (원)
1인	203,702	205,000	407,405	145,000	617,281	75,000
2인	346,845	355,000	693,691	235,000	1,051,048	115,000
3인	448,697	430,000	897,394	285,000	1,359,688	145,000
4인	550,548	530,000	1,101,097	350,000	1,668,329	175,000
5인	652,400	625,000	1,304,800	415,000	1,976,970	210,000
6인	754,251	725,000	1,508,502	480,000	2,285,610	240,000
7인	856,102	820,000	1,712,205	540,000	2,594,251	270,000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해산급여 : 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무엇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를

(어떻게)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울시다산콜센터 ☎ 120

기초연금제도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1. 지원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2015년)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및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 (50% 감액)

2. 지원내용

- 매달 25일에 월 최대 20만원 지급
- ※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나,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언제) 연중 상시(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가능)
(어디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어떻게) 전화 문의 또는 등기우편, 방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1355
서울시다산콜센터 ☎ 120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1. 지원대상(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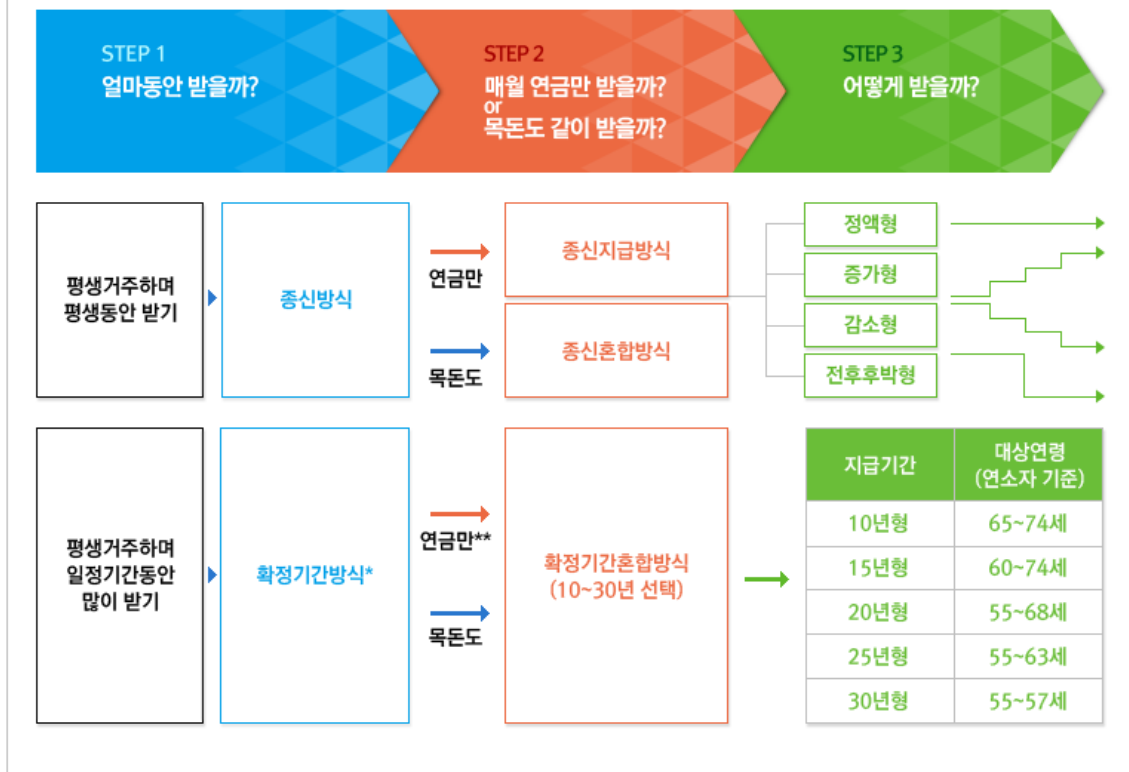
- 연령조건 :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부부 공동 소유일 경우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가능
- 주택조건
 - 보유수 : 1주택 소유자,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 그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주택유형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방식
일반주택	가입가능	
노인복지주택 (지자체에 신고 된 주택에 한함)	가입가능	가입불가
복합용도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가입가능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 면적이 1/2 이상)	

2.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 지급(국가 보증 금융상품, 역모기지론)
 - 사망 후 주택 처분하여 정산
 - 연금수령액 < 집값 : 상속인에게 차액 지급
 - 연금수령액 > 집값 : 상속인에 미청구
- 지급방식
 - 종신방식 : 평생거주하며 사망시까지 월지급금을 지급
 - 확정기간방식 : 평생거주하며 정해진 기간동안 월지급금을 지급

주택연금,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 지급기간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까지(종신)

이용도중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배우자는 급여 지급 없음.

※ 지급정지

- 부부 모두 사망 : 가입자만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 주택 소유권 상실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또는 재건축/재개발,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 장기 미거주 :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입원 및 장기요양 등 예외 인정)
-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무엇을) 보증신청을

구비서류 : 등본 2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근저당권 설정 시,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원본 동봉

(어떻게) 방문하여 상담 받고 신청하여, 심사 후 보증서 발급함.

- 담당부서 연락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경로우대제도(비용감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복지 증진 및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

1. 지원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

2. 지원내용

항목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교통비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기 10% 감면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문화 활동비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공원, 미술관 무료 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보건복지콜센터)
각종 공공요금 (노인복지 시설해당)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동 주민센터 (환경부)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해당 기관으로

(무엇을) 신분증 제시 또는 신청을

(어떻게) 전화, 방문 등으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코레일 ☎ 1544-7788

대한항공 ☎ 1588-2001

한국해운조합 ☎ 02-6096-2000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한국전력공사 ☎ 123

환경부 ☎ 1577-8866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에 대하여 감면과
전세자금 대출 등 기초생활 보장

1. 지원대상(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2.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 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재발급, 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동 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외 통화료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 (월 1만원 한도)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면제(월 1만5천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이하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인터넷	월 접속료 30%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출장검사장 포함)	교통안전공단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 감면		지자체별 지원 (별도 문의)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으로

- 전기요금, TV수신료 : 한국전력공사

- 복지전화서비스 : 전화국, 통신업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 모바일,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 123 / cyber.kepco.co.kr

kt전화국 ☎ 100 / help.olleh.com

이동통신업체

- SK텔레콤 ☎ 080-011-6000, 080-816-2000 /

www.sktelecom.com

- KT ☎ 100 / www.kt.com

- LG U+ ☎ 101, 1544-0010 / www.uplus.co.kr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www.ts2020.kr

열요금 감면 지원

소외된 이웃들의 난방기본권을 보장하고 내일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따뜻함을 나누는 지원사업

1. 지원대상(조건)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대상자

구분	적용대상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으로서 동사무소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 해당지역
 - 삼성지구, 은평지구 등
 - 강남구 수서동, 대치동, 송파지구, 강남보금자리, 문정건영, 가락한라, 동남권 등
 - 이촌동지구, 여의도지구, 마포지구, 반포지구, 상암1·2지구, 성산지구, 상암 DMC지구 등
- ※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임대아파트 제외

2. 지원내용

-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
 -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10,000원 (월)
 - 차상위계층 : 7,000원 (월)
 - 장애인(1~3급), 국가(5.18민주) 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 5,000원 (월)
 - 다자녀가구 : 4,000원 (월)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가
 - (언제) 매년 4~5월 (지원은 7~8월부터 시작)
 - (어디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으로
 - (무엇을) 에너지복지요금지원신청서 등을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차상위계층확인서
 - (어떻게)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www.kdhc.co.kr
 - 서울남부지사 ☎ 02-459-2488
 - 서울중앙지사 ☎ 02-305-2488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1. 지원대상(조건)

- 민간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계속거주 1년 이상(세대주 또는 계약자인 세대원)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서울형 기초생활보장가구 포함)

※ 신청제외가구

- 기초생활수급, 공공임대주택
- 부동산 소유자(주택, 토지 등)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
- 세대주 직업이 학생인 자

2. 지원내용

-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매월 25일 계좌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지원액	43,000원	47,500원	52,000원	58,500원	65,000원	72,5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초 (모집공고 기간에 맞추어)
 - (어디로) 동 주민센터로
 - (무엇을)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동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포함),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해당서류(차상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등을
 (어떻게) 방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다산콜센터 ☎ 120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2015년 기준)

연번	관련기관	전화번호
1	종로 사회복지과	2148-2575
2	중구 사회복지과	3396-5394
3	용산 사회복지과	2199-7133
4	성동 사회복지과	2286-6296
5	광진 사회복지과	450-7096
6	동대문 사회복지과	2127-5143
7	종량 사회복지과	2094-1693
8	성북 생활보장과	2241-2382
9	강북 노인복지과	901-6727
10	도봉 생활보장과	2091-3344
11	노원 복지정책과	2116-3671
12	은평 생활복지과	351-7084
13	서대문 사회복지과	330-1863
14	마포 복지행정과	3153-8812
15	양천 주택과	2620-3466
16	강서 사회복지과	2600-6355
17	구로 주택과	860-2927
18	금천 사회복지과	2627-1983
19	영등포 사회복지과	2670-3402
20	동작 사회복지과	820-9674
21	관악 생활복지과	879-5992
22	서초 사회복지과	2155-6661
23	강남 사회복지과	3423-5882
24	송파 복지정책과	2147-2705
25	강동 사회복지과	3425-5733
26	SH공사 임대공급팀	3410-7781

경로우대제도(세제혜택)

노인이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항목	내용	세부내용
상속세	상속세 인적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대상 : 60세 이상의 자 내용 :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제50조)	대상 : 60세(여 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연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대상 : 65세 이상인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 내용 : 연간 1인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경로우대자 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내용 : 전액 추가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대상 : 자녀 및 그 배우자가 부모 또는 상대 부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 - 아버지 60세 이상 또는 어머니 55세 이상 - 먼저 매매하는 집을 3년 이상 보유 -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 매매 내용 : 양도소득세 면제
생계형 저축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대상 : 60세 이상 노인 내용 :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제한특례법 89조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내용 :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증여세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 : 18세 이상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 증여받은 경우 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10% 세율을 적용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대상 : 18세 이상이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승계의 목적으로 증여·승계한 경우 내용 :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 중 5억원 공제, 10% 세율을 적용
국민 건강 보험료	대상 : 지역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내용 : - 소득 360만원 이하이며, - 재산 6,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9,000만원 이하인 경우 20% 경감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경감	

2.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해당 기관으로
 - (무엇을) 신분증 제시 또는 신청을
 - (어떻게) 전화, 방문 등으로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세청 ☎ 126

희망온돌: 희망마차

후원 및 자원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생필품 전달

1. 지원대상(조건)

- 저소득 취약계층(홀몸노인,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2. 지원내용

-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마차 차량 이용, 민간기부자원을 연계하여 물품 지원

대상자	주요 지원 품목	비고
일반가정	쌀, 라면 등 일반 선호물품 혼합	5품목 이상
독거노인	쌀, 라면, 캔류, 간편식, 식재료 등	5품목 이상
결식아동	쌀, 라면, 간편식, 과일류, 과자류, 음료류, 영양식 등	5품목 이상
다문화 가정	쌀, 라면, 간편식, 생활용품, 빵류, 과일류, 문화공연 상품권, 요식업체 무료식사권 등	5품목 이상
미혼모, 위기가정 편모·부, 조손가정	분유, 기저귀, 이유식 영양식, 생활용품 등	1개월 사용분
자연재해 가구	쌀, 라면, 햇반, 코펠, 버너, 담요 등	

- 긴급가정 지원 : 가정해체, 폭력가정, 경제적 파산,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긴급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맞춤형 꾸러미(box)를 3~6개월 한시 지원
- 나눔장터 운영 (거동불편자에 대해 가정배달 병행)
- 시설방문 지원 : 희망마차 나눔장터 참여가 불가능한 사회복지취약시설은 희망마차 이동차량이 직접 방문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자치구, 지역 내 시민단체, 거점기관 등에서 발굴하여
또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희망온돌로

(무엇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어떻게)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 02-2133-7375

다산콜센터 ☎ 120

희망온돌 홈페이지 ondol.welfare.seoul.kr

정부양곡 할인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

1. 지원대상(조건)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복지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정부양곡을 할인가구

구분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할인지원금	택배비
20kg	44,410	22,200	22,210	2,700
10kg	22,290	11,100	11,190	2,400

- ※ 생계·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kg 1포대) 이상인 경우 급여에서 공제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5인 이상 가구라도 월 20kg 2포대로 제한)
1인 가구 1회 2개월분(20kg)까지 구입(2개월에 1회, 4월부터 매월 10kg 1포)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가
 - (언제) 매월 10일까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어디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 (무엇을) 구입 신청서 등을
 -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접수 → 대금입금 후 택배 배송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1. 지원대상(조건)

-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거주 가구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거주 가구는 소득 무관 지원

2. 지원내용

- 가구당 연탄쿠폰 1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가자
(언제) 연중 신청기간에 맞추어(2014년 기준 5월)
(어디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무엇을) 이용 신청을
(어떻게) 방문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 빈곤예방

1. 지원대상(조건)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기초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 접수된 대상자는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판정과 개입기간 결정(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가구, 미선정 가구로 분류)

2. 지원내용

- 통합사례관리 : 대상 발굴 후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 ※ 가구당 생활지원비 최고 30만원, 진단비 및 교육비는 최대 50만원 지원
- 자원관리 : 지역사회 공식·비공식 자원 발굴, 활용, 공유 등 총괄 관리
- 지역보호체계 운영 :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 연계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 또는 주변인이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동 주민센터로
 - (무엇을) 상담 신청을
 -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 ☎ 02-6360-5401, 6

복지로 www.bokjiro.go.kr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 시민의 각종 금융복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자원 체계의 연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

1. 지원대상(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금융복지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시설종사자 등

2. 지원내용

- 복지 및 금융복지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가정재무상담
 - 전환대출
- 금융복지 및 법률서비스 연계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금융복지상담이 필요한 서울 시민이
 - (언제) 09:00~18:00
 - (어디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 (무엇을) 상담신청을
 - (어떻게) 온라인, 전화, 방문을 통해 상담 진행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 (홈페이지) sfwc.welfare.seoul.kr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무료법률구조
- 법률상담터
- 서울시 마을변호사
- 성년후견제도

무료법률구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분야의 사회복지 제도

1. 지원대상(조건)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

2. 지원내용

- 대상자별 상이한 법률 도움 제공
 - 대상자 범위 : 임금채불근로자, 기초연금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1~3급 무료, 4~6급 유료),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범죄피해자, 담배소매인, 선원, 기타영세민, 가족관계미등록자,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 귀화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등
 - 법률구조 범위 :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등으로
 - (무엇을) 상담 신청을
 - 구조 신청 : 등본, 수급자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입증자료 등
 - (어떻게)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관리팀 ☎ 132, 054-810-1063
온라인예약 www.klac.or.kr

※ 지역별 지부 현황

기관명	주소	관할	상담전화	전화업무
서울중앙지부	서초구 법원로4길 17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국번없이 132	02-3440-9503
서울동부지부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3층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국번없이 132	02-453-0708
서울남부지부	양천구 신월로 366 승소빌딩 2층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국번없이 132	02-2646-6117
서울북부지부	도봉구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5층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국번없이 132	02-978-4240
서울서부지부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국번없이 132	02-713-6039

※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현황

기관명	주소	상담전화	전화업무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빌딩 9층	국번없이 132	02-3482-1708

법률홈닥터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취약계층 등 일반이용자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1. 지원대상(조건)

-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기관
(기관 이용자 방문상담, 법률 강연, 사례관리 회의 등)

2. 지원내용

- 사회복지기관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면서 개인 및 기관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기관연계 등) 제공
- 별도 비용 없이 이용 가능, 교육의 경우 강사로 집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상담 및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관
(언제) 월~목 10:00~17:00 (변호사와 협의하여 일정 확정)
(어디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로
(무엇을) 법률홈닥터 상담 신청서를
(어떻게) 개인의 경우 홈페이지, 기관의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 담당부서 연락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 02-2110-4252
서울시 법률홈닥터 ☎ 02-771-3357

FAX 02-2021-1745

E-MAIL legalwelfare@s-win.kr

홈페이지 www.s-win.kr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연결된 변호사

1. 지원대상(조건)

-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2. 지원내용

- 무료 법률 상담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어디로) 동 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로
(무엇을)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신청카드를
(어떻게)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함.
- 담당부서 연락처 :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legal.seoul.go.kr

성년후견제도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인지기능이 쇠퇴하는 노인이나 치매노인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2.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임의후견 지원
 - 특정후견 지원
 - 후견대체제도 이용지원 : 신탁제도, 요양 및 의료 관련 사전지시서 작성 지원, 말기 상태 연명치료에 관한 사전지시서 작성 지원 등
 - 기타 : 후견인 활동 지원 등
 - ※ 후견인 임무 :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 결정 동의 등
- 서비스비용
 -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실비는 본인 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료 지원
 - 임의후견 : 공증비 6만원 내외, 심판청구비 10만원 내외 총 20만원 내외
 - 특정후견 : 심판청구비 10만원 내외 총 10만원 내외 본인부담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 등이
 - (언제) 연중 상시
 - (어디로) (사)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로

(무엇을) 이용상담을

(어떻게) 전화, 이메일, 방문하여 상담함.

- 담당부서 연락처 : 고령자 · 치매 후견센터 ☎ 02-766-0710

E-MAIL support0710@hanmail.net

홈페이지 www.silverweb.or.kr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 사랑의 그린PC 지원
- 그린스마트폰 지원

사랑의 그린PC 지원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통신기기 구입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에게
무상 보급하여 지역간, 계층간 사회 통합 유도 및 녹색정보화에 기여

1. 지원대상(조건)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단체, 기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단체
- ※ 타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 보급 받은 경우 보급 제외

2. 지원내용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는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료 보급 : 세대당 2년 이내 1대 보급
- • 사랑의 PC 보급 후 1년 동안 AS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언제) 연중 상시 (재고가 있을 시에, 사전 확인 요망)
(어디로) 서울IT희망나눔세상으로
(무엇을) 보급 신청서, 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 시설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 설립인가증 등 비영리 단체증명서
(어떻게) 인터넷 및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IT희망나눔세상

☎ 02-2133-2890 (A/S ☎ 02-2133-1230)

FAX 02-768-8843

홈페이지 gov.seoul.go.kr/lovepc-request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의PC 담당자 앞

그린스마트폰 지원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폴더폰을 보급 운영

1. 지원대상(조건)

- 서울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 지원내용

- 중고를 포함한 스마트폰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입
 - 기계 결함으로 인한 수리는 1년 무상, 기타 수리는 유상
- ※ 가입비용 및 월 요금은 본인 부담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 (언제) 연중 상시 (재고가 있을 시에, 사전 확인 요망)
 - (어디로) 서울IT희망나눔세상으로
 - (무엇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등)
 - (어떻게) 인터넷 및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함.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IT희망나눔세상

☎ 02-2133-2890

FAX 02-768-8843

홈페이지 gov.seoul.go.kr/lovesmart-request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린스마트폰 담당자 앞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 치매가족휴가제도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돌봄지원사업)

치매가족휴가제도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 동안 치매환자에게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

1. 지원대상(조건)

-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수발부담이 큰 항목 1개 이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환자 가족(장기요양등급외 A, B등급)
-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상 '치매',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 확인

2. 지원내용

- 기존 서비스(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외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서비스 추가 이용
- ※ 장기요양 수급자(치매특별등급 포함) : 연간 6일 범위 내 추가 이용 가능
(월 15일 이내 단기보호 급여와 별도)
- 서비스 비용
 - 공통 적용 : 1일 36,380원 6일 이용 시 218,280원 (식대 별도 본인부담)
 - 장기요양 수급자 : 급여비용의 15% (1일 기준 5,457원, 6일 32,742원)
 - ※ 기초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7.5% (50%경감, 1일 기준 약 2,729원, 6일 약 16,374원)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30%이상 ~ 150%이하	일 36,380원		일 29,880원		일 6,500원
100%이상 ~ 130%이하	일 36,380원		일 30,580원		일 5,8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일 36,380원	=	일 31,280원	+	일 5,100원
차상위 계층	일 36,380원		일 33,880원		일 2,500원
기초생활수급자	일 36,380원		일 36,380원		무료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설급여 이용신청 전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
(누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리인 가능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어디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무엇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대리인 신청 :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어떻게)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접수

- 서비스 신청 절차

(누가) 서비스 이용자 및 신규 대상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 읍·면·동 주민센터(노인돌봄)
(무엇을)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및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어떻게) 방문을 통해 신청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

-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1. 지원대상(조건)

- 가족관련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

2. 지원내용

구분	공동사업	설명
가족돌봄 나눔 (3가지 중 2가지 선택)	모두가족봉사단	기존 가족봉사단의 활동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가족 품앗이	전업주부와 맞벌이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토요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연간 20시간 이상)
가족상담	가족(집단)상담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 • 가족단위의 면접 상담 유도 • 연간 상담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상담을 연간 2건 이상 반드시 포함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	월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 (※ 참가자 상황 등 고려 요일변경 가능)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다양한 가족사업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관계향상교육, 놀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실시(2인 이상 가족, 10시간 이상 실시)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지역사회 협의체,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유관기관 사업 협약 5건 이상)

※ 시군구센터 통합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마다 행해지는 일부프로그램이 상이 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서비스 신청 절차 :

(누가) 가족프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언제) 연중 (프로그램 운영 시점에 맞춰)

(어디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무엇을) 신청서를

(어떻게) 센터 내방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

- 담당부서 연락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familynet.or.kr